

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(안)

의안
번호 371

제안년월일 : 1994년 9 월 일

제안자 :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

□ 제안이유

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규정함
(안 제1조)

나. 기금의 조성은 충청북도 출연금, 기관단체와 독자가 기탁성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함 (안 제4조)

다.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원장을 부지사, 부위원장은 도기획관리실장, 위원은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장,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시·군지부장 3인, 도 가정복지국장,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10인이내로 한다.
(안 제5조)

라.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기간으로 함(안 제8조)

마. 운용기금의 사용은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, 충효예 절 등 전통문화 선양,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 지원, 충청북도노인회보 발간,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등 (안 제 12조)

바.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국장을, 기금 출납원으로 노인복지계장을 둔다.

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연합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은 연합회사무국장으로 함 (안 제 13조)

사. 적립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, 연합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해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후 도지사·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.

□ 참고사항 (관련법규 : 별첨)

- 노인복지법 제 4 조
- 지방자치법 제 133조
- 지방재정법 제 29조, 제 110조